

언론중재 일년의 회고

언론중재위원 고려대 교수
임희섭

언론중재위원회의 앞으로의 과제는 언론중재의 업무를 강화하고 한국언론의 질적 발전에 공헌하기 위하여 언론중재기능에 관한 학문적인 연구를 계속하는 일이다.

언론중재위원회는 언론기본법 제 50 조 1 항에 명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수정보도청구에 의한 분쟁을 중재하고 언론침해에 관한 사항을 심의」 할 것을 설립목적으로 하여 1981 년 3 월 31 일 발족하였으며 그 일주년을 맞게 되었다. 언론중재위원회는 무엇보다도 언론에 의한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수정보도청구를 중재함으로서 인권을 옹호하는 것을 임무로 하는 법정기관으로서 설립되었기 때문에 언론계는 물론 일반국민의 관심과 기대속에서 출범을 보게 되었다.

언론중재위원회가 지난해 4 월 29 일 헌판식을 갖고 업무를 개시한 이래 12 월 말까지 약 8 개월 동안의 중재업무의 실적을 보면 약 44 개 언론사를 대상으로 한 24 건의 중재신청사건을 취급하여 월평균 3 건의 사건을 중재한 셈이다. 이와 같은 실적은 업무를 개시할 첫 8 개월 동만의 것이므로, 앞으로 중재위원회의 업무와 기능이 일반국민에게 더 많이 알려지게 됨에 따라 중재신청은 급속하게 증가되어갈 것은 분명한 일이다.

총 24 건의 중재신청사건의 내용을 유형별로 분류해 보면 명예훼손과 사생활침해가 전체의 66.6%인 16 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업체의 신용훼손주장에 의한 중재신청이 4 건(16.7%), 저작권침해주장에 의한 중재신청이 역시 4 건(16.7%)이었다.

중재신청의 대상이 된 언론기능은 총 44 개사(중복을 포함)이었는데 이를 매체별로 분류해보면 중앙일간지가 7 건으로서 15.9%를 차지하였다. 그러므로 적어도 지금까지의 중재신청을 기초로 해서 분석한다면 일간지가 전체의 73.3%로서 압도적인 46 건을 차지하고 있다. 일간지를 제외한 다른 매체들은 통신사가 2 건, 방송사가 2 건, 주간신문 1 신문이 2 건, 주간잡지가 2 건 등으로 아직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 못하다.

위와 같은 총 44 건의 중재신청사건을 처리한 결과를 보면 거의 절반에 가까운 45.5%(20 건)의 사건이 중재 이후에 신청인에 의해 취하되었으며, 피신청인의 불참이나 중재거부에 의한 중재불성립이 27.2%인 12 건, 중재합의가 20.5%인 9 건이었다. 그리고 나머지 3 건은 중재신청이 기각, 또는 각하된 사건이었다. 이처럼 많은 중재신청사건이 신청인에 의해 도중에 취하된 것은 대부분이 피신청언론사의 막후접촉에 의한 것으로서 이러한 현상은 인권보호의 차원에서 본다면 매우 바람직하지 못한 현상이다.

언론침해의 피해자인 중재신청자가 언론사에 의해 직접 접근되어 회유를 받음으로서 신청인이 침해사실을 회복받지 못한 채 신청을 취하하는 일이 많은 것은 앞으로 별도로 보완되어야 할 문제점으로 지적되어진다. 그러나 중재합의가 20.5%에 불과하고 취하와 불성립의 비율이 높다고 해서 중재의 성과가 부진했다고 판단하는 것은 속단이다. 왜냐하면 언론매체들은 중재신청이 막후접촉에 의한 취하로 끝나던, 일단 중재신청의 대상이 되면 그 중재사건이 잘 마무리되게 하기 위해 고심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적지 않은 사회적 압력이 되기 때문이다. 언론매체들은 잇따른 중재신청으로 인해 그만큼 언론침해를 줄이기 위해 자체적인 노력을 더하게 되고 보다 정확하고 공정한 보도를 위해 보다 노력하는 자세를 갖게 되었다고 믿어진다.

정정보도청구에 의한 분쟁사례의 원인을 분석해 보면 오보나 과잉보도가 대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다. 오보의 경우는 경찰의 사건보고서만 보고 취재한다든지, 경찰에 접수된 고발내용만 보고 취재하거나 이해당사자중 한편의 주장만 듣고 기사화한 것, 이웃주민의 이야기만 듣고 기사화한 것, 또는 취재기자의 전문지식의 결여에 의한 것 등으로서 취재기자들이 좀더 성실하게 취재하기만 하면 일어나지 않아도 좋을 오보들이 대부분이다.

과잉보도의 경우도 혐의사실을 보도함으로써 범인으로 오인케 하는 일, 사건과 직접 관련이 없는 사생활을 공개하거나 학교, 기업체의 이름을 공개하는 일 등으로서 취재와 기사작성의 과정에서 조금만 더 신중하게 하면 시정되어질 수 있는 사건들이 대부분인 것이다.

그러므로 언론중재위원회의 성과는 직접 눈에 나타나는 중재합의라고 하는 실적에 의해서만 평가될 수 없는 것이며, 오히려 간접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게 취재 및 기사작성의 과정에서 오보와 과잉보도를 줄이게 하는 효과가 더 중요한 것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중재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중재에 직접 참여해 본 필자의 경험을 통해 가지는 느낌으로서는 중재피신청인측인 언론사들이 취재과정에서의 오보와 과잉보도의 사례들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문제점으로서 인정하고 있으며 가능한 한 성실하게 중재에 합의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었다. 그러나 여대생 박상은양의 피살사건, 윤노파 피살사건, 윤상군의 피랍살해사건 등 대부분의 사건기사를 취급해온 언론의 보도는

사생활침해 등 과잉보도로 인한 언론침해가 지나쳤다는 사회적 여론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한 것이었다.

그와 같은 사건보도에 있어서의 언론침해사실에 대해서는 언론매체 종사자들 자신들도 크게 반성하는 기사를 쓰고 있으면서도 쉽게 시정되지 않는 언론의 정성으로 아직 남아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명백하고도 중대한 언론침해 사실에 대해서는 비록 중재신청이 없다 하더라도 중재위원회에서 심의하고 그 시정을 당해 언론사에 권고할 수 있는 법적 기능이 언론기본법 제 50 조 8 항에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언론중재위원회는 보도자유를 최대한 존중하기 위해 언론침해의 심의와 시정권고 결정의 절차를 매우 신중히 하도록 규정한 것이다. 즉 명백한 언론침해사실은 반드시 중재부의 발의에 의해 소위원회에서 심의한 뒤 중재위원회 총회의 의결을 거쳐서 비로소 시정권고를 하도록 절차규정을 제정하였으며, 언론침해의 심의 기준을 설정한 것이다.

언론중재위원회의 일년을 회고하면서 앞으로의 몇 가지 과제를 생각해 본다면 다음과 같은 점들을 지적할 수 있다.

첫째로 언론중재위원회의 기능을 보다 광범하게 홍보함으로써 국민의 이용도를 높이는 일이다. 아직도 언론중재위원회의 설립과 그 취지 그리고 언론중재신청의 절차 등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는 국민이 많기 때문에 언론침해의 피해자들이 중재신청을 하지 못하고 넘어가는 사례가 허다하다.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한 정정보도청구가 실효를 거둘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확신을 갖고 있지 못하며 언론사에 의한 보복기사를 두려워하는 등으로 될 수 있으면 중재신청을 기피하는 경향도 적지 않은 것이다. 지금까지의 중재신청사건들은 중재가 불성립되면 법정투쟁도 불사하겠다는 변호사의 권고를 받아 중재신청을 한 사람들이 많았던 점을 보아도 아직은 많은 국민들이 언론중재위원회의 기능에 대해 충분히 알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된다.

둘째로 언론중재위원회의 앞으로의 과제는 언론중재의 업무를 강화하고 한국언론의 질적 발전에 공헌하기 위하여 언론중재기능에 관한 학문적인 연구를 계속하는 일이다. 해외의 언론중재업무에 대하여, 특히 언론이 잘 발달된 선진국의 언론중재기능과 언론침해로부터의 인권보호의 기능에 대하여 많은 연구를 축적함으로써 한국에 있어서의 언론중재업무를 보다 합리화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언론중재위원회는 이제 겨우 그 일주년을 맞게 되었지만 언론침해를 방지하고 인권을 보호하는 중요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대단히 고무적인 출발을 가하였다고 믿는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국민에 의한 중재위원회의 사용도가 높아지고 언론사의 이해와 인식이 높아지고 있으며 중재위원들이 자신의 임무에 대하여 사명감과 보람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언론중재위원회의 활동은 앞으로 더욱 한국의 언론발전과 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

□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서울대 대학원 미 Emory대학교 대학원 수료

□ 저술 「한국사회개발연구」, 논문 「한국인의법의식 연구」 외 다수

□ 현재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언론중재위원회 위원